

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,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NPO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음
- 나. 최근 시민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높아지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권을 중심으로 단체 간 교류·성장 지원, 생활의제해결 지원 등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고자 함
- 다. 서울 서남권(강서구·양천구·구로구·금천구·영등포구·동작구·관악구) NPO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단체와 자치구의 협치, 권역 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 간의 협력지원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그물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- 라. 기존 권역NPO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,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역시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·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,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마. 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,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2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
 - 다양한 민간단체,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·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
⇒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하다.
- 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1) 사업목적

- 서울 서남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※ 서남권 : 강서구·양천구·구로구·금천구·영등포구·동작구·관악구

2) 위탁사무 내용

- ①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·시설·설비 등의 제공
- ②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·컨설팅
- ③ 서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자치구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
- ④ 서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·연구,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⑤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⑥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
-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명 칭 : 「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」
- 개관시기(안) : 2021년 1월
- 소재지(안) :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8, 7층 (당산동1가)
- 시설규모(안) : 291.71㎡

다목적실, 협업보육실, 회의실, 사무실 등



지역여건	지하철2·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내 소통·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접근성이 뛰어남
------	---

마. 민간위탁기간

-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1.1. ~ 2023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1년 소요예산 : 750,000천원('20년도 예산편성 추진)
 - 민간위탁금 700백만원 (인건비 300, 운영비 136, 사업비 250, 일반관리비 14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적정 (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, 2020. 7. 8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센터의 위탁)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 이병국 (☎2133-6561)